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악기제조(주) 근로자가 노사분규중 부상으로 상병명 “좌 요부좌상, 좌 신장좌상(의증), 우 대퇴부좌상”이 발생한 경우

(88-52호, 88. 3. 21.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인천시 북구 효성동

성명: 김○○

소속: ○○악기제조(주)

원처분을 받은 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상 동

원 처 분 청 : 인천지방노동청장

주 문

이 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인천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9. 3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청구인은 ○○악기제조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1987. 8. 12.부터 87. 8. 23.까지 인천직할시 소재 ○○악기제조주식회사 본사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던 바, 동 쟁의 진행중인 1987. 8.

14. 농성근로자로부터 밖으로 쫓겨난 조·반장들이 일부 근로자와 합세하여 구사대를 조직하고, 이 구사대가 회사내에서 농성하면서 파괴와 방화를 자행하려는 자와 외부불순세력을 차단하고, 이미 농성근로자들이 공장 지하실에 감금하고 있던 중역 2명을 구출하고자 87. 8. 15. 07:00경 회사 소유 대형트럭(11톤)에 구사단이 분승하고 본사 정문을 향하여 진입하려는 순간, 이를 저지하려는 농성 근로자들이 투석, 각목 등을 휘두르며 대항하여 오자, 트럭운전자가 당황하여 트럭을 90도 방향으로 급선회 하던중 트럭에 타고 있던 청구인외 4명이 트럭위에서 투석, 각목 등에 맞아 부상을 입고, 청구인은 “좌 요부좌상, 좌 신장좌상(의증), 우 대퇴부 좌상”의 상병명으로 원처분청에 요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노동쟁의(분규)가 불법농성이고, 구사단측의 행동은 회사측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중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 및 기인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라고 하나 당시 피재근로자의 한사람인 “장○○”의 진술에 의하면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본사에 가도록 지시한 사람은 회사측이 아닌 노동조합장 “백○○”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생산1담당 상무 “송○○”본인도 자술서에서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사단측에 농성근로자를 해산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자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동 보험법상의 취지로 보아 사업주의 지

배관리를 이탈한 상태하에서 노동쟁의 진행중 근로자간의 실력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고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비록 노사분규가 불법농성이었다고 하나, 임금인상 등을 요구, 건물의 유리창을 파괴, 집기등을 부수고 방화까지 일삼으려는 농성근로자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구사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며, 본인은 회사측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하였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노사분규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구사대는 회사지시에 의해 그리고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중 부상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의 수행성과 기인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노동쟁의중에 입은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8. 2. 11. 김○○)
2. 원처분청 의견서(88. 2. 26. 인천지방노동청)
3. 결정서 사본(87. 12.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오○○)
4. 요양신청서 사본(87. 8. 18. 김○○)
5.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87. 9.)
6. 기 타

이상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검토하건대

첫째 : 청구인들이 노동쟁의 진행중 회사내에서 농성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파괴, 방화 등을

못하도록 하고, 또한 이미 회사내 지하실에 감금상태에 있는 중역 2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트럭을 사용하여 회사 정문을 진입하려던 순간 농성근로자들의 저지와 투석, 각목 난타등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다.

둘째 : 과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적이고 폭력화된 노동쟁의 진행중에 회사측 지시에 의하여 구사대가 조직되었고, 또 그 활동을 전개하던중 부상을 입은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이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보험법상의 산업재해의 보상 대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업무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재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 : 정문 경비원이 근무중 투석에 의해 부상)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와 성질이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다.

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구사대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하여도, 현행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보험법상의 고용종속관계나, 사업주 지배관리를 이탈한 부당한 지시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불승인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운수(주) 운전기사가 근무중 “만성B형간염”이 발생한 경우

(88-191호, 88. 7. 18.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명 : 박○○

소속 : ○○운수(주)

원처분을 받은 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 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2. 13.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급여 불응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 ○○운수(주) 소속 근로자로서 1986. 1. 4. 동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1987. 10. 24. 건강진단서 간장질환 GOT 59. GPT 116이라는 간기능 악화로 나타났으며 1987. 11. 27. 재검진 결과 “만성 B형간염”으로 판명되어 1988. 3. 26.까지 요양한 자로서, 원처분청에 산재보험법 제9조의 3에 의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 불응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휴무없이 계속적인 근무와, 혼탁한 공기속에서 근무하면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하여 원처분청이 업무의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불응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및 이유서(1988. 6. 16. 박○○)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6.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4. 19. 박○○)
4. 진단서 사본(1988. 영암병원장)
5. 진단서 사본(1988. 3. 10. 영암병원장)
6. 진단서 사본(1988. 5. 14. 영암병원장)
7. 본부자문의 소견서 사본(1988. 4. 15. 자문의 윤○○)
8.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 사본
9. 건강진단서 사본(1986. 1. 27. 송천병원장)
10.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운수(주)소속 운전기사로서 1986. 1. 4.에 동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87. 10. 24. 건강진단서 간장질환 GOT59. GPT 116이라는 간기능 악화로 나타났으며 1987. 11. 27. 재검진 결과 “만성 B형간염”으로 판명되어 1988. 3. 26.까지 요양한 후 원처분청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응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6. 1. 1~1. 23 및 1986. 3. 23~6. 13은 휴무없이 근무하였고, 운전기사는 혼탁한 공기와 밀폐된 차안의 흡연 등으로 유해한 환경속에서 장기간 계속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병명 “만성 B형간염”이 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범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노동부 본부 자문의에게 자문한 바 그 소견이 “검사 결과로 보아 1987. 11. 27.일 간염(B형바이러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B형 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업무상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간염 발현이전에 B형 바이러스의 보균 상태도 불분명하므로 업무상 과로가 본 질환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상 “B형 간염이 수술, 수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또는 B형간염 보균자가 외상 등으로 인하여 활동성이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B형간염을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단 신

저농도의 유기용제에 만성적인 폭로시의 용량-관련 신경행동학적인 효과

구 정 완

Bleecker 등은 1991년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에 저농도의 유기용제에 만성적인 폭로시의 용량-관련 신경행동학적 효과를 발표하였다.

장기간의 유기용제 폭로시에 신경정신학적 증상들이 발생한다는 역학조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기억력 장애, 집중력 곤란, 피로, 인격의 변화, 두통, 흥분성을 포함한 증상들을 “painter’s syndrome”, 신경쇠약, 정신-기질 증후군(psycho-organic syndrome)이라고 한다.

Lindstrom은 유기용제중독의 진단학적 기준으로서 1) 폭로의 입증 2) 전형적인 자각증상을 나타내는 중추와 말초신경계의 기질적인 손상; 뇌전도, 근전도 및 심리검사에 의한 임상적인 신경학적인 상태의 병리학적 소견 3) 일차적인 정신질환을 포함한 다른 질환의 배제를 제안하였다. 중추와 말초신경계의 기능에 대한 만성적 저농도의 유기용제 폭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단면조사연구를 실

시하여 상기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개의 도료 제조 공장에 근무하는 187명의 근로자 (평균 연령±표준 편차; 42±8.8세)를 대상으로 혼합 유기용제에 대한 저농도 폭로가 정신-기질 증후군을 초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지능, 성격 등의 종합 테스트는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설문조사, 직업력과 환경폭로력에 대한 설문조사, 정신학적 장애의 발생빈도를 조사하는 Present State Examination,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을 조사하는 Zung Depression Scale, 신경쇠약 증상과 관련된 Scandinavian Questionnaire 16, 신경심리 검사, 진동역치(vibration thresholds)로 구성되었다. 전체 탄화수소로서 표시한 유기용제 폭로는 13-15년 동안의 개인 호흡용역 포집기로 재취한 폭로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

여러가지 교란인자를 보정한 선형 회귀 분석에서 혼합 유기용제 폭로의 증가와 진동역치에 대한 신경행동학적 수행력과 많은 정신심리 검사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 주었다. 중추와 말초신경계통의 신경행동학적 결과에 대한 만성 유기용제 폭로의 용량-관련 효과가 나타났지만, 정신-기질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들의 특성과는 용량-관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가적으로, 유기용제에 대한 TLV를 결정할 때에 준임상적인 신경행동학적 결과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신경독성 폭로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신경행동학적 수행력의 변화가 얼마나 의미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